

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안내

□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

1. (수업 운영)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정상수업 진행
2. (학습권 보장) 교수자, 학생 등이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, 원격수업, 하이브리드수업, 학습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학습권을 보장

□ 공휴일 보강일 안내

공휴일	날짜(요일)	보강일(요일)	비고
어린이날	5월 5일(금)	6월 9일(금)	* 1학기 : 3.2.(목) ~ 6.21.(수) (15주) * 보강주간 : 6.8.(목) ~ 6.14.(수) (대면보강 권장)
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	5월 29일(월)	6월 12일(월)	
개교기념일	6월 1일(목)	6월 8일(목)	
현충일	6월 6일(화)	6월 13일(화)	

<코로나19 관련 안내>

□ 주의사항

구분	주의사항
등교 전	• 등교 전에 발열 체크 및 유증상 확인 • 코로나19 의심증상(발열, 호흡기증상 등)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(RAT) 검사 실시 ①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: 학교 등교 (증상 지속 시 재검사)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: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*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병원 및 자택 대기 - 검사 결과 음성 : 학교 등교 (증상 지속 시 재검사) - 검사 결과 양성 : 학부사무실 보고(별첨1 및 증빙자료 제출) •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,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일 경우 등교 • 수업 불가 사유는 상세하게 작성
등교 후	•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귀가 조치 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(출석 등 평가 불이익은 없음) • 교내 및 수업 중 마스크 착용 • 건물, 강의실 등 입실 전·후 증별 손소독제 활용하여 손 소독 실시
※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(5일) 동안 등교 중지 권고 및 해당기간 출석인정 ※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담당교수가 원격수업, 강의자료 제공 등 학습권 보장 - 실습 보강은 담당교수와 상의	

□ 출석인정 절차

학생	대면수업일(시간) 전 확진 및 기타사항(PCR 및 전문가용 RAT 실시 등) 발생
	↓
	① 당일 학부사무실 보고 ② 코로나19 관련 수업 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사유발생 2주 이내 제출 (학부사무실) *기한준수 - 음성 : 검사일 기준 2주 이내 / 양성 :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
↓	
학부	학생 수강 과목별 정리 후 해당교수에게 신청서 사본 송부 ※ 신청서 사본 송부 및 학부 원본 보관, 교무처 제출(내부결재)
↓	
교수	종합정보시스템 출결등록 처리(결석자에서 삭제) 출석부 처리(출석인정)
	↓
	학기말 성적단표 및 출석부 제출시 함께 제출

<별첨 1>

코로나19 관련 수업 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

1. 학생 인적 사항

학부	학년	학번	성명

2. 해당 수업 교과목 및 수업 일정

교과목명	담당 교수명	수업일자	수업시간
		월 일	
		월 일	
		월 일	
		월 일	
		월 일	
		월 일	
		월 일	

3. 수업 불가 사유(상세 입력)

해당여부(V)	수업불가 사유
	1. 본인 확진(확진일 :) *증빙첨부 (양성확인서 등)
	2.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*증빙첨부 (음성확인서 등)
	3. 기타(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)

*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(ex. 23.3.3.(금) 검사 및 격리해제 시 23.3.17.(금)까지 제출)

*2023.6.1. 이후 확진 시 출석인정 기간은 5일이며 주말을 포함함(ex)수요일 확진 시 월요일 등교)

본인은 상기와 같이 수업 불가 사유 인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일 : 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학부장 : (인)